전자채권 사고신고(취하)서

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 앞

다음과 같이 전자채권을 사고신고(취하)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자채권번호		금 액	
발 행 일		만 기 일	
판매기업 기업명		판매기업 사업자번호	
담보금 입금유무		사고신고 구분	□ 신고 □ 취하
사고신고(취하) 사 유			

20 년 월 일

발행인 : (인)

주 소 :

사업자등록번호 :

주) 1. 사고신고서 접수는 구매기업요청에 의한 사고신고(계약불이행, 피사취, 합의불가),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의 경우에만 가능
2. 구매기업 요청에 의한 사고신고는 이미 전자채권담보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사고신고 접수 불가
3. 구매기업 요청에 의한 사고신고 및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신고담보금을 입금하고 「전자채권 사고신고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」를 작성하여야 함

5-06-0261(1-1) (2021.09 개정)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10년)

하나은행